

의안번호	제 51 호
의 결 년 월 일	1998 년 11월 21 일 (제 79 회)

의 결 사 항
원안가결

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보 은 군 수
제 출 년 월 일	1998. 11. 21.

기획감사실장 심사필



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1. 24

제 출 자 : 보 은 군 수

1. 제안이유

‘98. 9. 26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 :



제3조제5항중 “소속”을 “해당사업 관련부서”로 한다.

3. 근거 법령 :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

4. 사전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첨 부 : 1.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2. 신·구조문대비표

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5항중 “소속”을 “해당사업 관련부서”로 한다.

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 【용자대상】 ①~④ (생략) ⑤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용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, 보고하게 할수있다.	제3조 【용자대상】 ①~④(현행과 같음) ⑤ <u>해당사업</u> <u>관련부서</u>